

수신: 국회의장

제목 :『國會에서의 證言, 鑑定 등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기원빌딩 4층

전화:796-8364/전송:793-474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인

**소개의원 :**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건명	「國會에서의 證言, 鑑定 등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소개년월일	1997년 5월 29일

## 소개의견

1. 지난 한보청문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은 자신의 형사상의 불리함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 특히 그중에도 정태수, 김현철등 핵심적인 증인들의 위증은 조사특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이후 검찰조사에서 이들의 위증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위증의 죄에 대한 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출석한 증인들은 위증으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거짓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4. 청원인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상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수시로 조사특위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수의견이 보장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이면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고발의 요건을 보다 실제화 하였습니다.
5. 본 의원은 많은 문제점을 낳았던 지난 한보청문회를 돌아보건대, 청원인의 이러한 의견이 국회청문회를 보다 실질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이와 같은 소개 의견을 제출합니다.

소개의원: 인

수신: 국회의장

제목 : 『國會에서의 證言, 鑑定 등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 전송: 793-474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인

**소개의원 :**

# 『國會에서의 證言, 鑑定 등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 1. 개정 취지

지난 한보청문회를 통하여 빼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사상의 불리함으로 인하여 소추의 위험 때문에 증언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것이 예사였다.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정해진 위증의 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위증으로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본다는 태도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조사특위는 김현철씨의 위증 등 핵심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수시로 조사특위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수의견을 존중토록 제도화 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이면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고발의 요건을 보다 실제화 하도록 하였다.

## 2. 개정안의 주요골자

가. 국정 감사, 조사 및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시 소수당의 의사를 존중토록 함.(관련조항 제5조 ①항의 개정)

나. 고발의 요건을 의장, 위원장 명의로만 가능한 것을 위원회의 위원이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 (관련조항 제15조 ②항의 개정)

## 3. 개정안 전문

제5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등】 ①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할 때 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적위원의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15조 【고발】 ② 제1항의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 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의 명의로 한다.

## 條文對比表

現行法	改方案
<p>제5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등】</p> <p>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법에 의한 보고나 서유제 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p>	<p>제5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등】</p> <p>①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 출의 요구 또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할 때 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적위원의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p>
<p>제15조 【고발】</p> <p>② 제1항의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p>	<p>제15조 【고발】</p> <p>② 제1항의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 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의 명의로 한다.</p>